

동두천시에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'99. 12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'99. 12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
 - 제3차 본회의 상정
 -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 -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,3차 회의, 토론
 -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
우리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,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·관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도모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액을 10억원으로 함.
-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.
- 기금을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함.
- 장학생의 선발대상을 정함.
-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액을 정함.
-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내고장 학교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기금운영의 투명한 관리와 기

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음.

그러나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동두천시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적 기금 설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할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